

<자료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전문가위원회 권고>

(1) 1995년 제66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1996년 총회보고)

본 위원회는 大阪府特別英語教員組合(OFSET)이 제2차대전 이전 및 대전 중의 협약적용에 관한 1995년 6월 12일자 의견에 유의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그 기간 중 협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이 있었던 것에 유의한다. 이 청구는, 협약에 의해 포함된 금지에 해당하는 상황인, 소위 군대 “위안소”에 구금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의 침해와 성적 학대를 거론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행위는 본 협약을 위반하는 성적 노예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일본) 정부에 대해 1995년 8월 31일에 OFSET의 서한의 사본을 송부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다.

OFSET은 관련 여성의 강제근로에서 발생하는 임금, 보상 및 기타의 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동 조합의 통보에서 나타난 주장에 근거하면, 이러한 여성은 협약에 따른 임금 기타의 급부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약 및 위원회의 권한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본 위원회는 요구되고 있는 보상 및 급부의 구제를 명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이 구제는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희망하는 바이다.